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13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정준호·임호선·김태선

서영교 • 이춘석 • 민홍철

이기헌 • 민병덕 • 진선미

이연희 · 이학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「형법」에 따른 임의적 몰수·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.

그런데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법적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,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·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·추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 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4(몰수 및 추징) ① 제14조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(報酬)로 얻은 재산 (이하 이 조에서 "범죄수익"이라 한다)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은 몰수하고,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(價額)을 추징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0조까지, 제10조의3, 제10 조의4, 제11조, 제12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몰수·추징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의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4조의4(몰수 및 추징) ① 제14
	조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
	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
	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
	재산(이하 이 조에서 "범죄수
	익"이라 한다)과 범죄수익에서
	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, 이를
	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
	가액(價額)을 추징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
	에 관하여는 「범죄수익은닉의
	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
	률」 제8조부터 제10조까지, 제
	<u>10</u> 조의3, 제10조의4, 제11조, 제
	<u>12</u> 조를 준용한다.